

용인 플랫폼시티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33-4077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4.01.)로부터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	2026.03.13.(금)	2026.04.22.(수)	2026.04.27.(월)	2026.04.30.(목)	2026.05.01.(금)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22.(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095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3.13.(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044**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 정	2026.04.27.(월)	2026.04.30.(목)	2026.05.01.(금)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건본주택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54-9)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 가격이 6억원 이상일 경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6.04.01.)로부터 6개월 적용됩니다.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5-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7층 7개동 일반분양 총 238세대 중 잔여 98세대
- 입주시기 : 2028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095	01	084.6802A	84A	55	101	201, 301, 601, 701, 102, 402, 502, 602, 104, 204, 304, 504, 604
					102	101, 301, 401, 601, 202, 402, 602, 702, 104, 204, 304, 504, 604, 704
					103	101, 201, 401, 501, 601, 202, 302, 602, 702, 104, 204, 304, 504, 604
					107	101, 201, 301, 501, 701, 103, 303, 403, 703, 206, 406, 506, 606, 706
	02	084.6968B	84B	26	101	103, 303, 403, 503
					102	303, 403, 503, 603, 703
					103	403, 703
					107	102, 202, 302, 402, 602, 702, 104, 304, 404, 504, 604, 704, 205, 405, 705
	03	084.6402C	84C	10	111	202
					112	102, 202, 104, 204
					113	102, 203, 204
					114	101, 201
	04	103.8844A	103A	6	108	101, 102
					109	101, 102, 202
					110	202
	05	103.8844B	103B	1	110	101
	합 계			98	-	

■ 공급금액 표

(단위: 세대, 원)

약식 표기 (타입)	동 별	공급 세대 수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계약 시	계약 후 1개월 내	2026.06.19	2026.10.16.	2027.02.19.	2027.06.18.	2027.09.17.	2027.12.17.	입주지정일		
84A	101동,102동,103동4호	55	1F테라스	3	414,960,000	383,040,000	-	798,000,000	10,000,000	69,800,000	79,800,000	79,800,000	79,800,000	79,800,000	79,800,000	79,800,000	239,400,000		
	107동3호			1	400,400,000	369,600,000	-	770,000,000	10,000,000	67,000,000	77,000,000	77,000,000	77,000,000	77,000,000	77,000,000	77,000,000	231,000,000		
	101동,102동,103동4호 107동6호		2F	4	389,480,000	359,520,000	-	749,000,000	10,000,000	6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224,700,000		
	101동,102동,103동4호 107동3호6호		3~4F	6	395,720,000	365,280,000	-	761,000,000	10,000,000	6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228,300,000		
	101동,102동,103동4호 107동6호		5~6F	8	399,880,000	369,120,000	-	769,000,000	10,000,000	6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230,700,000		
	102동4호107동3호6호		7F	3	405,600,000	374,400,000	-	780,000,000	10,000,000	6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234,000,000		
	101동2호		1F테라스	1	404,040,000	372,960,000	-	777,000,000	10,000,000	6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233,100,000	
	107동1호			1	396,760,000	366,240,000	-	763,000,000	10,000,000	6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228,900,000		
	102동,103동1호			1F	2	373,880,000	345,120,000	-	719,000,000	10,000,000	6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215,700,000	
	101동,102동,103동 1,2호, 107동1호			2F	5	379,600,000	350,400,000	-	730,000,000	10,000,000	6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219,000,000
				3~4F	8	385,320,000	355,680,000	-	741,000,000	10,000,000	6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222,300,000
				5~6F	9	389,480,000	359,520,000	-	749,000,000	10,000,000	6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224,700,000
				7F	4	395,200,000	364,800,000	-	760,000,000	10,000,000	6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228,000,000
				7F	4	395,200,000	364,800,000	-	760,000,000	10,000,000	6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228,000,000
84B	101동3호	26	1F테라스	1	430,560,000	397,440,000	-	828,000,000	10,000,000	7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248,400,000		
	107동4호		1F	1	391,560,000	361,440,000	-	753,000,000	10,000,000	6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225,900,000		

	107동5호		2F	1	397,800,000	367,200,000	-	765,000,000	10,000,000	6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229,500,000	
	101동,102동,103동 3호, 107동 4,5호		3~4F	8	403,520,000	372,480,000	-	776,000,000	10,000,000	6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232,800,000	
	101동,102동3호, 107동 4호		5~6F	5	408,200,000	376,800,000	-	785,000,000	10,000,000	6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235,500,000	
	102동,103동3호, 107동 4,5호		7F	4	413,400,000	381,600,000	-	795,000,000	10,000,000	69,50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238,500,000	
	107동2호		1F테라스	1	412,360,000	380,640,000	-	793,000,000	10,000,000	6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237,900,000
			2F	1	387,400,000	357,600,000	-	745,000,000	10,000,000	6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223,500,000
			3~4F	2	393,120,000	362,880,000	-	756,000,000	10,000,000	65,600,000	75,600,000	75,600,000	75,600,000	75,600,000	75,600,000	75,600,000	226,800,000
			5~6F	1	397,800,000	367,200,000	-	765,000,000	10,000,000	6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229,500,000
			7F	1	403,000,000	372,000,000	-	775,000,000	10,000,000	6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232,500,000
84C	105T동4호	10	1F테라스	1	405,600,000	374,400,000	-	780,000,000	10,000,000	6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234,000,000	
	2			397,800,000	367,200,000	-	765,000,000	10,000,000	6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229,500,000		
	104T동2호 105T동,106T동 2,3,4호		2F테라스	5	409,760,000	378,240,000	-	788,000,000	10,000,000	6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236,400,000	
	107T동1호		1F테라스	1	387,920,000	358,080,000	-	746,000,000	10,000,000	64,600,000	74,600,000	74,600,000	74,600,000	74,600,000	74,600,000	223,800,000	
	107T동1호		2F테라스	1	399,360,000	368,640,000	-	768,000,000	10,000,000	66,800,000	76,800,000	76,800,000	76,800,000	76,800,000	76,800,000	230,400,000	
103A	101T동,102T동1,2호	6	1F테라스	4	453,490,000	404,100,000	40,410,000	898,000,000	10,000,000	7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269,400,000	
	102T동,103T동2호		2F테라스	2	458,540,000	408,600,000	40,860,000	908,000,000	10,000,000	80,800,000	90,800,000	90,800,000	90,800,000	90,800,000	90,800,000	272,400,000	
103B	103T동1호	1	1F	1	418,140,000	372,600,000	37,260,000	828,000,000	10,000,000	7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248,40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동은 저층테라스동(저층 테라스 타입)+상부일반주동이 수직으로 결합된 복합 주동 형태로 한 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별도의 주동으로 표현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01동/101T동, 102동/102T동, 103동/103T동, 104동/104T동, 105동/105T동, 106동/106T동, 107동/107T동)

※ 테라스 동은 청약홈 시스템상 청약 당첨 시 아래의 동으로 표기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01T동=108동, 102T동=109동, 103T동=110동, 104T동=111동, 105T동=112동, 106T동=113동, 107T동=114동)

※ 103T동의 103B타입은 테라스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세대이니 참고하시어 청약 하시기 바랍니다.

※ 테라스 동 외 상부 일반주동 1층에는 주택형별(타입) 테라스가 설계된 세대(일부 세대)가 있으나 테라스 타입으로 별도 표기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조회기간 : 2026.04.30.(목) ~ 2026.05.09.(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제공일시 : 2026.04.30.(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제3자		○	위임장	본인	건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도장		• 서명 또는 날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당첨자 계약 체결

구분	일정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6.05.01.(금) 10:00 ~ 14:00	용인 플랫폼시티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 건본주택(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54-9)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여야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항목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신협	131-022-817010	코리아신탁(주)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건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3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301홍길동'으로 기재)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기간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		부동산 실거래신고서		• 접수 장소에 비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 홈페이지 서식 게시 / 접수 장소에 비치(※ 6억 초과주택에 한함)

			입주계획서		
	○		인지세 납부 증명서 (정부수입인지)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후 사본 제출 (사업주체 및 계약자 부담) • 수입인지 세액 1) 아파트 공급계약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해당) :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시 35만원 (사업주체 및 계약자 부담(1/2)) 2) 발코니 확장계약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도급에 관한 증서 해당)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0,000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0,000원 그 외 법령 참조 (사업주체 및 계약자 부담(1/2)) •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 용도 :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 또는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은 대리불가)
	○	○	위임장		• 견본주택 비치
		○	○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고, 발코니 확장계약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동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부담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 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발코니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 포함]

약식 표기(타입)	공급가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6.06.19	입주지정일	
84A	34,300,000	3,430,000	3,430,000	27,440,000	-
84B	34,300,000	3,430,000	3,430,000	27,440,000	-
84C	32,000,000	3,200,000	3,200,000	25,600,000	-
103A	33,600,000	3,360,000	3,360,000	26,880,000	-
103B	33,600,000	3,360,000	3,360,000	26,880,000	-

2)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계약금, 중도금, 잔금)	신협	131-022-817034	코리아신탱(주)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추가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 등이 각각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람.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 계약금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무통장 입금 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시 : 101동 301호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301홍길동'으로 / 102동 504호의 경우 '1020504홍길동'으로 기재)

■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의 경우, 계약자 대상으로 추후 별도 계약일정을 통보 할 예정입니다.

※ 무순위(사후) 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자세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

- 큰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 분	사업주체(시행수탁사)	시행위탁사	시공사
상 호	코리아신탁(주)	명주산업개발(주)	라운건설(주)
법인등록번호	110111-2937831	110111-3022243	190111-000649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대치동, 해성2빌딩10층)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0, 1104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금로 998, 비동 1층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6.03.13.)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yp-raon.com>)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54-9

■ 분양 문의 : 1533-4077